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

## 평가원장 초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에 설립되어, 전국 4년제 197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학간 자율 협의체입니다.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대교협 병설 기관으로 고등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 등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평가 전문 기관입니다. 평가원은 2010년 11월에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3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평가원에서는 대학평가·인증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갖춘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개요

- 직위 : 한국대학평가원장
- 직무 : 한국대학평가원 업무 총괄
  - 대학기관평가인증
  - 대학평가 국제협력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NIC) 업무 등
- 임기 : 2년(2025. 1. 1. ~ 2026. 12. 31.)

### 2.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와 사립학교법 제54조3의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학교육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원대학이나 관련기관에 소속된 교원
  - 임기 중 교육공무원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 제출서류

- 공모 지원 신청서
- 이력서(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 업무수행 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경력 및 자격증 등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대학평가 관련 경력 필수 기재

### 4. 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일 : 2024. 9. 27.(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
- 주소 :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부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지원서 제출 방법 : 운영지원부(02-6919-3934)
  - 한국대학평가원 업무 내용 : 평가인증팀(02-6919-3923)

### 5. 평가원장 선출 절차 및 방법

- ① '평가원장추천전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의 원장 후보자를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 추천
- ②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③ 평가원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임명

### 6. 기타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대교협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http://www.kcue.or.kr))를 통해 공고함
-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함

2024. 9. 2.

한국대학교육협회장

## [붙임] 관련 규정

### 한국대학평가원장 선출 규정

[제정 2015.07.21.]

[개정 2019.10.18.]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23조6항, 한국대학평가원 설치·운영 규정 제5조4항에 따른 한국대학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18).

제 2 조(자격) 평가원장은 다음 각 항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와 사립학교법 제54조3의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대학교육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원대학이나 관련기관에 소속된 교원
- ③ 임기 중 교육공무원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 3 조(선출) ① 평가원장은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 평가원장추천전형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출한다.

② 제1항의 평가원장추천전형위원회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중 고등교육계 저명인사, 고등교육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산업계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대학평가 전문가가 1인씩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지원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의 평가원장 후보자를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 추천한다.

제 4 조(공개모집 공고) ① 위원장은 평가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또는 기타 사유로 평가원장 선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 공개모집 내용을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원대학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원장 공개모집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기타 경력 및 자격증 등

③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평가원장의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임을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지 않는다.

④ 연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 5 조(선출절차 및 방법) ① 위원장은 평가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원장추천전형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이력 및 관련 자료와 회의 소집일시 및 장소를 위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의 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추천자가 1인인 경우에도 동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공모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 6 조(선거결과 공표) 위원장은 평가원장 선출 예정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출 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운영성과평가) ①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연 1회 평가원장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원장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3항의 연임 여부 결정에 활용한다.

② 평가원장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지침은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8조(세부사항) 평가원장 선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